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의무지급 신설〉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7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27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1. 5.
- (3) 회 부 일 : 2024. 11. 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

이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 및 신청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년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인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무지급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반드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 ----- ----- ----- ----- ----- ----- .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¹⁾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월 3만원에서 월 2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주1):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개정안은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

1)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에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여야만 지급 가능하므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또한, 장애아동수당과는 수급권자의 연령만 다를 뿐, ‘저소득층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보전’이라는 동일한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²⁾의 경우에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수급권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補填)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겐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중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

- 다만,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만으로는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보이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개정안 시행 이전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지만, 장애아동수당을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장애아동의 소급 지급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2조(장애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의 장애아동부터 적용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수용)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수급권자의 연령만 상이할 뿐(장애수당은 18세 이상,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은 동일함.
-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무 지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장애아동수당은 동일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아동과 보호자가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장애아동수당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의무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수〉

연도별	구분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재가	보장시설	주거, 교육, 차상위
2022년	중증(중전 1, 2, 3급 중복)	3,724	1,172	3,063
	경증(중전 3~6급)	4,665	1,065	3,059
2023년	중증(중전 1, 2, 3급 중복)	3,876	1,104	3,074
	경증(중전 3~6급)	4,960	1,067	3,060
2024년	중증(중전 1, 2, 3급 중복)	4,060	1,094	3,229
	경증(중전 3~6급)	5,154	1,082	3,184

주1): 2024년은 10월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